6. ‘단위업무시스템’이란 회계시스템･자재관리시스템･생산관리시스템･판매관리시스템･인사 관리시스템 등과 같은 개별업무별 시스템을 말한다. 7.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이란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작성･저장･통제･검색 하고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을 말한다. 8. ‘텍스트파일(Text File)’이란 일반적인 문자･숫자･각종 기호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ASCII file, EBCDIC file 등)을 말한다. 9. ‘외부개발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개발 전문업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업종별로 정형화한 프로그램 등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이하, “상업용 소프트웨어”라 한다)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ERP시스템)를 포함한다. 10. ‘외부 전산조직’이란 전자기록 관리 전문업체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전자기록을 관리 또는 보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모든 납세자와 외부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전자거래를 포함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모든 전자기록에 효력을 미친다. 제2장 전자기록의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전자기록의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관련되는 전자기록을 모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기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존하여야 한다. 1. 가시성 및 검색기능을 갖출 것 2. 입력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수정･추가･삭제 등을 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의 전자기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 보존】 ① 납세자는 전자기록 보존과 함께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